

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5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행정조직개편에 의한 명칭 변경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

주요골자

법령위반 및 불합리한 사항 보완

- “기금은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.”를 → “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” (제10조 제2항)

행정조직개편에 의한 명칭변경

- 여성복지과장을 → 여성정책담당사무관으로(제5조 제4항)
- 사회복지국장을 → 여성정책관으로(제11조)
- 생활지도계장을 → 여성정책담당사무관(제11조)

의안전문 : 별첨

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

- 지방재정법제64조
-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규칙제13조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관리등에관한규정

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중 “여성복지과장”을 “여성정책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

제8조제1항중 “1차에 한하여”를 삭제한다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.

제11조중 “사회복지국장”을 “여성정책관”으로 하고 “생활지도계장”을 “여성정책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